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46호 2019. 10. 4.(금)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396호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397호	남해군 주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6
남해군 조례 제2398호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
남해군 조례 제2399호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2
남해군 조례 제2400호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남해군 조례 제2401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남해군 조례 제2402호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5
남해군 조례 제2403호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28
남해군 조례 제2404호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33
남해군 조례 제2405호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41
남해군 조례 제2406호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47
남해군 조례 제2407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남해군 조례 제2408호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남해군 조례 제2409호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남해군 조례 제2410호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남해군 조례 제2411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남해군 조례 제2412호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71
남해군 조례 제2413호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122호	향촌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82
남해군 고시 제2019-123호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85
남해군 고시 제2019-125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88

규 칙

남해군 규칙 제2019-1159호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92
남해군 규칙 제2019-1160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3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1276호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05
남해군 공고 제2019-128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출입허가 공고	110
남해군 공고 제2019-1305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122
남해군 공고 제2019-1327호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127
남해군 공고 제2019-1328호	남해군 주차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40
남해군 공고 제2019-1329호	면허처분 및 소멸 공고문(남해양식 제532호)	147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396호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부지 내의 가공시설과 부대시설(사무실, 물품관리실, 기계실, 저장고 등), 그 밖에 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한 가공센터 내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가공센터가 보유한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남해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95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군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가공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농산물 가공 관련 창업 지원 및 시제품·판매용 제품생산 지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남해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7.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 홍보
8.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 가공육성을 위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별도의 책임공무원 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책임공무원 또는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2. 남해군의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할 수 있다.

제8조(가공원료 사용) ① 이용자는 남해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100분의 50이상 투입되는 원료를 말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공시설 이용료 산정 기준표(제6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비 고
고정비 (A)	장비이용단가	$[구입가격(원) - 잔존가격(원)] \times 6퍼센트$	
	감가상각비	$[구입가격(원) - 잔존가격(원)] / 내구연한$	내구연한 : 10년/12월/30일
	자본이자	$[구입가격(원) + 잔존가격(원)] / 2 \times 금리(3\%)$	
	유지보수비	구입가격(원) \times 수리비계수	수리비계수 : 0.5%
변동비 (B)	전 력 비	장비 별 가동 전력의 80퍼센트 적용	
	연 료 비	보일러 등유 27 l /hr	
	수 도 비	장비별 공정수 사용량 \times 수도요금	
	하수도비	장비별 오수 발생량 \times 하수도요금	
	재 료 비	원부재료 및 포장재료(실 사용량, 구입가)	
연간예상이용일수(C)			
1일 장비사용료		$(A + B) / C$	

※ 산출근거

- 잔존가격 : 기계나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후 남아있는 가치
- 유지보수비 : 구입가격(원) \times 수리비계수(0.005%)

※ 장비이용단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4조를 준용하여 6%로 산정

※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별표4에 따른 정액법을 적용

※ 이용료는 1회 4시간 사용 기준이며, 사용시설 사전테스트 및 세척소독 시간을 포함

※ 사용료 산출 후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가공장비 취득가액에 따른 이용료

가공장비 취득가액	이용료
500만원 미만	1,000원/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2,000원/회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4,000원/회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6,000원/회

※ 장비취득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용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 이용료를 산정

남해군 조례 제2397호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또는 각종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남해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입하는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남해군민을 피보험자로 남해군수와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사”란 군수와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피보험자) 군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남해군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안에 보험 계약에 관한 내용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따른 보험료를 보험사에 납입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재난의 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은 보험사에 그 피해를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 당시 제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398호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호제3호 중 “남해군체육회와 남해군생활체육회”를 “남해군체육회”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남해군체육회”를 “남해군체육회 및 가맹단체”로 한다.

제1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로페이 및 화전(花錢) 결제 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제8항(중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제10조 관련)

기준/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이	용	료	비	고
수영장	일반인	개 인	1회 2시간 내		3,500				
		단 체	"		3,000				
		월회원(일반,강습)	"		60,000				
	군 인	개 인	"		3,000				
		단 체	"		2,500				
		월회원(일반,강습)	"		50,000				
	경로대상자	개 인	"		2,500				
		단 체	"		2,000				
		월회원(일반,강습)	"		40,000				
	어 린 이 청 소 년	개 인	"		2,000				
		단 체	"		1,500				
		월회원(일반,강습)	"		30,000				
체력단련실 (헬스장)	일반인	1일	1회 2시간 내		3,500				
		1개월	"		50,000				
	청소년 군 인	1일	"		3,000				
		1개월	"		40,000				
	경로대상자	1일	"		2,500				
		1개월	"		30,000				
체육관	체육경기		평 일		20,000		1회 2시간 내		
			주말·공휴일		30,000				
	체육경기 외		평 일		50,000		1회 2시간 내		
			주말·공휴일		60,000				

※ 사물함 대여료는 월 4,000원으로 한다.

※ 회원권 재발급 비용은 2,000원으로 한다.

남해군 조례 제2399호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남해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

②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군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견학,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군수는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제20조(설치)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둔다.

제21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군수는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실비보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24조(설치)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고령친화 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행정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2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0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00호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앞에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를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01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 및”을 “관리와”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무도관”을 “무도관,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남해군체육회”를 “남해군체육회 및 가맹단체”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로페이 및 화전(花錢) 결제 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제5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 해 군 공 보

2019년 10월 4일

제 646 호 (23)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원)

구 분			기 준	요 금(부가가치세 포함)		
				평일	토.공휴일	
공설운동장	남해읍 (천연잔디)	필드	1일 1회 3시간내	330,000	380,000	
		조명	"	90,000	90,000	
		트랙		무료	무료	
면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천연잔디구장	필드	1일 1회 3시간내	220,000	270,000	
	인조잔디구장	필드	1일 1회 3시간내	50,000	70,000	
실내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체육경기	1회/2시간	50,000	60,000	
		체육이외	1회/2시간	150,000	200,000	
		냉·난방시설	"	30,000	30,000	
		복싱장	-	무료	무료	
		스포츠댄스장	-	무료	무료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천연잔디)	필드	1일 1회 3시간내	330,000	380,000	
		조명	"	80,000	80,000	
	바다,나비, 치자,비자 (천연잔디)	필드	"	220,000	270,000	
		조명		30,000	30,000	
	나비,비자 (인조잔디)	필드	"	50,000	70,000	
		조명	"	20,000	20,000	
	야구장	인조구장	"	130,000	160,000	
		조명	"	110,000	110,000	
	풋살 경기장	필드	-	무료	무료	
	테니스장	코트	-	무료	무료	
족구장	균일원	구장	-	무료	무료	
공설 테니스장	남해읍	코트	1회 3시간/면	11,000	16,500	
생활체육관 (탁구장)	남해읍	개인	1회/3시간	2,000	3,000	
		월회원	개인	1회/3시간	30,000	30,000
			단체	1회/3시간	20,000	20,000
생활체육관 (사격장)	남해읍	-	1회/1시간	10,000	15,000	
게이트볼장	읍면	-	-	무료	무료	
그라운드 골프장	읍면	-	-	무료	무료	
금해정	궁도장	사대	1일/1회	20,000	25,000	
무도관	검도관	-	1회/3시간	30,000	40,000	
	유도관	-	1회/3시간	30,000	40,000	

-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전용 기본료의 100분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다.

2. 야외공연장 사용료

시설물별	기 준	요금(평일)	비 고
스포츠파크 야외공연장	1일 1회 (4시간 기준)	100,000원	토·공휴일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남해군 조례 제2402호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인적현황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03호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란 바다조망을 목적으로 남해군에서 설치한 전망대로서 카페테리아, 판매장, 옥상전망대, 화장실 등 건축물 및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스카이워크, 주차장, 데크 등이 포함된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익스트림 스포츠시설의 이용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명칭)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는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1-3번지 일원,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352-17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전망대의 구체적인 명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전망대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전망대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설변경으로 수탁자가 설치·사용하던 모든 시설물 등은 위탁운영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군수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6조(손해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가액 산정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조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4. 수탁자가 전망대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경우
- ②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운영 및 휴장) ①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스카이워크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② 시설물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전망대 시설 중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 표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1.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2.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4.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5.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의 환불) 이미 징수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관리자의 책임 등 군수가 환불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이용의 제한·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망대 중 옥상전망대,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스카이워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정신질환자 및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3. 만7세 미만 : 익스트림 스포츠시설의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변상책임)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 (제10조 관련)

1.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단위 : 원)

구 분	대인	소인
개 인	3,000	2,000
단 체	2,000	1,000

가. 소 인 : 만7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나. 대 인 : 만19세 이상

다. 단 체 : 유료입장객 중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남해군 조례 제2404호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남해군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남해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도시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및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4. “우호협력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 물적, 제도적 토대의 구축
3. 국제 교류 협력을 통한 역사·문화·관광 진흥
4.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5.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제적 역량 증진

제4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각 분야에 군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6조(중장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해군 국제화촉진 및 교류협력사업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이하 “자매도시등”이라 한다)와의 교류 전략
3. 민간차원의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4.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시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중장기계획의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군수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제·문화·예술·관광·체육·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민간단체 및 군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3.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4. 자매도시등과의 국제교류협력사업
5. 그 밖에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민간 지원)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제7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 군이 관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경제인 또는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9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민간 위탁)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재난·재해 구호 지원) 군수는 자매도시등이 지진·태풍·해일·폭우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구호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화 인재 육성) 군수는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12조(포상) 군수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자매도시등의 선정·운영

제13조(협정 체결 등)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도시등과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등은 재정여건 및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14조(자매도시등의 선정) 군수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도시등 협정체결 제의를 받거나 제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제15조(교류협력 여건조성) 군수는 자매도시등과 협정 체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제16조(의회 의결) 군수는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협정체결의 효력) 자매도시등과의 협정체결의 효력은 양쪽 도시의 공동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 합의된 문서에 양쪽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제18조(교류촉진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도시등과의 협정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결연 관계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하여 관리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해야 한다.

제19조(협정의 파기) 군수는 자매도시등 협정체결 후 양쪽 도시 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매결연도시와의 협정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남해군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명예국제협력관 위촉·운영

제20조(협력관 위촉)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매결연도시, 우호협력도시 및 그 밖에 외국 도시에 거주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남해군 명예국제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외국 해당 도시의 한인회 또는 재외동포회의 임원
2. 외국 해당 도시의 유력 인사
3. 군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1조(역할 및 의무) ①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 및 문화·예술·관광·체육교류 등에 관한 사항
3. 군의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의 대외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② 협력관은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임기 및 해촉) ①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된 경우

제23조(경비 지원) ①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출장여비(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 2. 통신비(우편요금, 국제전화요금 등)
- 3. 통역비
-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 ② 협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경비를 별지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출장여비는 사전 지급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경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협력관의 활동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협력관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에 준한다.
 - ⑤ 협력관의 여비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외국 도시와의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 도시 관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남해군 명예국제협력관 경비 청구서

활 동 명 :

추 진 기 간 :

(단위 : 원)

구 분	청구금액	세부내역	비 고
출장여비			
통신비			
통역비			
기 타			

※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할 것

「남해군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국제협력관 활동 경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남/여) (인 또는 서명)

첨부 : 활동성과 및 증빙자료 부.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2405호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거주·생활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청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 다. 청년의 고용확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 라.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생활안정

-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공간 마련
- 바. 청년의 권리보호
- 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 4.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 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관광, 경제, 주거, 복지, 문화, 교육 등 청년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1. 남해군의회 의원
-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관계 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군수는 남해군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군정 참여·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과 관련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청년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 청년네트워크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청년활동 지원 및 청년네트워크의 모집·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지역 정착 등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소득창출, 관내 취업 활성화 및 안정적 일자리 지원 등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주거, 학업, 취업, 결혼, 보육, 안전, 보건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3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및 국내외 문화교류 등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상남도,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정착 및 생활안정,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청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06호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남해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 향상과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사업 시행 및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남해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직위해제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남해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남해군의회 의원,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 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에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2.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상담실, 수유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
4.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
3.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의 국내연수 지원
4.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5.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 격려금 지급
6. 우수 부서 또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품 지급
7.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8. 직장 동호회 지원
9. 직장 화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단합대회 및 연찬회 지원
10.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단체보험 지원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12.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 기기·장비의 지급 등
13.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에 한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직무수행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절차 등)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공무원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해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1.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 위탁협약에 포함할 사항,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남해군 조례 제2407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호 중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를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남해군 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다.”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제18조의”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8조제1항”을 “영 제7조제1항”으로 하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뺏다”를 “공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빼지”를 “공제하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빼는”을 “공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6항 중 “제18조의 연가일수” 를 “연가일수”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8조제2항” 을 “영 제7조제2항” 으로, “단” 을 “다만”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5일” 을 “20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7조의2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중 출산의 일수란의 “5” 를 “10” 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 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별 지]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남해군 조례 제2408호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건축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법 제1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사용승인에 관하여 법 제22조를 준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한한다.)

제35조제3항제3호 중 “조명·조경·파고라·긴 의자를”을 “조명·파고라·긴 의자 등 편의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군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관리·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 중 “농가창고 등”을 “농가창고,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한다.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로 하고, 제6장에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제46조(종전의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제46조(중전의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

별표3 제1호다목 중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을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을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중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남해군 조례 제2409호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군”을 “남해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을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군수”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조성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용도에 맞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남해마늘 명품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위한 종구갱신 및 기반조성
2. 마늘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자재 지원 등
3. 남해마늘 명품 브랜드 제고를 위한 유통·마케팅

제8조제1항제3호 중 “담당주사”를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을 “농업기술과장”으로, “남해군 농업협동조합운영협의회장”을 “(재)남해마늘연구소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의회 의원
2.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제9조제5항 중 “두며 마늘업무 담당주사가” 를 “두며, 간사는 마늘업무 담당 팀장이”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10호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 별표5의3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금지사실 및 금지 시작일을 관보에 고시 등을 한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7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납부필증의 공급·판매가격(제9조 관련)

[단위:원]

규 격	용 도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5 ℓ (단독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110	10	120
60 ℓ (공동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1,410	90	1,500
120 ℓ (공동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2,820	180	3,000
20 ℓ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846	54	900
60 ℓ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2,538	162	2,700
120 ℓ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5,076	324	5,400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사양(제10조 관련)

[단위:원]

종 류	색 상	규 격	재 질	비 고
5 l (단독주택용)	분홍색	가로14.5cm × 세로3cm	유포지	
60 l (공동주택용)	노란색			
120 l (공동주택용)	파란색			
20 l (업소용)	초록색			
60 l (업소용)	빨간색			
120 l (업소용)	주황색			

남해군 조례 제2411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공고하여야 한다.” 를 “매년 2월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가목 중 “인가·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를 “인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임시사용승인 포함)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오수발생량 1m³/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남해군 공보 또는 전 읍·면 게시판 등에 매년 2월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 중 “제15조제1항제6호에” 를 “제1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시기로 하며,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에도 같은 규정을” 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원인자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 5의2를 참조하여 사용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소멸시효) 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부담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를 따르며,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를 따른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2]

원인자부담금 사용기준(제17조의2)

1. 관로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	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도 준설토 처리
오·우수 분리벽 설치	하수도 준설사업
	하수암거 수리(수선) 공사
	하수관로 수리(수선) 공사

2. 펌프장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	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펌프장시설 설치 및 교체 공사	펌프장시설 수리(수선) 공사
중계펌프장 운영 판넬 및 전기실 CCTV 설치공사	펌프장 집수정 침사물 준설 공사

3.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	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하수처리설비 설치 및 교체 공사	하수처리설비 소모성 부품 구입 및 수리(수선) 공사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송수관로 가압펌프 설치	하수처리장 송풍동 외 무정전 축전지 구입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UPS) 및 제어설비 교체	하수처리장 창호 교체 및 도장공사
하수처리장 유량계 교체	하수처리장 건축물 균열 및 누수 보수
처리장 TMS관제시스템 교체	
처리장 낙뢰방지 설비 공사	

남해군 조례 제2412호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군의 출자·출연기관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제4조제1호의 부서장 및 제4조제2호의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1호의 부서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남해군공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군수는 군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기관의 부서,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13호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단체”를 각각 “법인·단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을 “이 조례를 적용할”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윤리심사 및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치거나 회부하여 윤리심사 또는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1. 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2. 검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4. 의원이 남해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남해군과 계약 체결
6. 관리인 등 검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겸직금지) ① 의원은 남해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남해군이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 남해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남해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5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9. 최근 2년 이내에 안전심의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본회의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전심의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9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남해군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남해군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남해군의회, 남해군의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9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남해군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남해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제2호 중 “친족”을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의4(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남해군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남해군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남해군 또는 남해군의 산하기관에 남해군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남해군 또는 남해군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5조제4항 중 “별지 제2호의2 서식” 을 “별지 제2호의5 서식” 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 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 친족” 을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의2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 서식” 을 “별지 제2호의5 서식” 으로 하고, 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2호의3 서식, 별지 제2호의4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남해군의회, 남해군의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남해군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시

남해군고시 제2019-122호

항촌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남해군 남면 선구리 609-10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항촌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이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9. 9. 23.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향촌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2. 사업 목적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위치 : 남해군 남면 선구리 향촌마을
4. 사업(변경) 내용
 - 지역경관개선
 - 쓰레기집하장조성 : 바지선 1척
 - 향촌 건강 숲 조성 : A=1,000m²
 - 양심쓰레기통 제작 설치 : 중형쓰레기통 6개소
 - 수려향 전망대공원 : A=1,684m² → A=2,450m² (증 766m²)
 - 지역역량강화계획(변경없음)
 -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등 1식
5. 총 사업비(변경없음) : 498백만원(국비 348, 지방비 150)
6. 사업기간(변경없음) : 2017년 2월 ~ 2019년 12월
7.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세부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화(지역개발팀, 055-860-3615)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 붙임참조

붙임

항촌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편입토지 조서

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대장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수려향 전망대공원	남해	남	선구	609	43	임	766	766	국(재정부)	소공원 조성
					이	하	여	백		
계				1필지			766	766		

남해군 고시 제 2019 - 123호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5일

남 해 군 수

1. 실시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사업위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69-2 외 22필지
- 사업규모 : 급경사지 정비 1식(L=728.0m)
- 사 업 비 : 1,820백만원(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등)
- 사업기간 : 2019. 1. ~ 2020. 12.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 해 군 공 보

(86) 제 646호

2019년 10월 4일

3. 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 남해군 안전총괄과 비치 및 열람 가능

4.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 결과

- 타부서 및 타 기관 사업의 중복성과 연계성은 없음

5. 사업효과 분석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6. 연차별 투자계획

사 업 명	구분	합계	‘19년까지	‘19년 추진	비고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내용	· 실시설계 · 보상협의 · 급경사지정비	· 실시설계 · 보상협의	· 급경사지정비	
	사업비(백만원)	1,820	400	1,420	
	국비	910	200	710	
	도비	273	60	213	
	군비	637	140	497	

7.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사업 완료 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붕괴위험 지역 지정 해제토록 하고,
-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해빙기, 우기)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 예정

8.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토지와 그 소유자 명세 : 붙임 참조

9.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안전총괄과(055-860-329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순위	읍면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상주면 양아리	1255	1255-1	임야	109	51		정성0
2	상주면 양아리	1257	1257-1	전	1,157	568		정성0
3	상주면 양아리	1256	1256-1	전	1,101	796	상주면 양아리	정차0
4	상주면 양아리	산272	산272-1	임야	14,678	183	상주면 양아리	정차0
5	상주면 양아리	산272	산272-2	임야	14,678	52	상주면 양아리	정차0
6	상주면 양아리	1261	1261-1	전	1,134	127	남해읍 아산리	정용0
7	상주면 양아리	1263	1263-1	전	737	252	부산광역시 서구	정용0
8	상주면 양아리	1264	1264-1	전	1,540	178	상주면 양아리	정시0
9	상주면 양아리	1269		전	215	215	상주면 양아리	정시0
10	상주면 양아리	산266-1	산266-2	임야	9,684	2,273	상주면 양아리	정시0
11	상주면 양아리	1266	1266-1	전	122	14	이동면 양아리	정달0
12	상주면 양아리	1272	1272-1	전	225	54	부산광역시 서구	정군0
13	상주면 양아리	1276	1276-1	전	893	345	이동면 석평리	정영0
14	상주면 양아리	1277-1	1277-3	전	840	202	부산시 사하구	정경0
15	상주면 양아리	산265-1	산265-7	임야	17,785	153	이동면 양아리	박종0 외 1
16	상주면 양아리	산265-5	산265-8	임야	7,306	1,180	서울시 노원구	김정0
17	상주면 양아리	산265-6	산265-10	임야	12,297	2,949	상주면 양아리	신순0
18	상주면 양아리	산267-2	산267-4	임야	2,661	652	사천시 정동면	강효0
19	상주면 양아리	산267-3	산267-6	임야	798	158	부산시 영도구	정신0
20	상주면 양아리	산269	산269-2	임야	3,471	379	부산시 사상구	이상0
21	상주면 양아리	산270	산270-1	임야	3,471	676	이동면 양아리	김도환0 외 2
22	상주면 양아리	산271	산271-2	임야	3,967	1,641	미조면 미조로	정대0
합계					98,869	13,098		

남해군 고시 제2019 - 125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23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27.

남 해 군 수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551,318,829	522,498,426	28,820,403	
일 반 회 계	448,709,234	426,864,857	21,844,377	
특 별 회 계	102,609,595	95,633,569	6,976,026	
상수도특별회계	22,165,360	16,702,940	5,462,420	
청사건립특별회계	52,207,373	52,207,373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55,887	954,914	973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25,820	2,125,82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85,587	675,587	10,000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24,469,568	22,966,935	1,502,633	

□ 세입예산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448,709,234	426,864,857	21,844,377	
지 방 세 수 입	14,405,300	14,405,300	-	
지방세	14,405,300	14,405,300	-	
세 외 수 입	11,257,261	10,926,489	330,772	
경상적세외수입	6,202,040	6,197,648	4,392	
임시적세외수입	5,055,221	4,728,841	326,380	
지방교부세	196,358,727	181,624,000	14,734,727	
조정교부금등	18,286,608	14,360,000	3,926,608	
보조금	156,885,955	154,041,989	2,843,966	
국고보조금등	126,959,303	125,525,742	1,433,561	
도비보조금등	29,926,652	28,516,247	1,410,40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515,383	51,507,079	8,304	
보전수입등	50,088,742	50,088,742	-	
내부거래	1,426,641	1,418,337	8,304	

남 해 군 공 보

(90) 제 646호

2019년 10월 4일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102,609,595	95,633,569	6,976,026	
지방세			-	
세외수입	4,554,603	4,143,153	411,450	
경상적세외수입	4,379,535	4,015,083	364,452	
임시적세외수입	175,068	128,070	46,998	
지방교부세	502,000		502,000	
보조금	16,849,440	14,207,467	2,641,973	
국고보조금등	15,078,538	12,567,759	2,510,779	
도비보조금등	1,770,902	1,639,708	131,19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703,552	77,282,949	3,420,603	
보전수입등	3,879,540	3,879,540	-	
내부거래	76,824,012	73,403,409	3,420,603	

□ 세출예산

○ 일반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448,709,234	426,864,857	21,844,377	
인 건 비	57,795,638	56,798,866	996,772	
물 건 비	27,988,237	27,140,050	848,187	
경 상 이 전	130,846,715	129,113,470	1,733,245	
자 본 지 출	179,961,191	165,038,007	14,923,184	
용 자 및 출 자			-	
보 전 재 원			-	
내 부 거 래	36,577,221	33,156,618	3,420,603	
예 비 비 및 기 타	15,540,232	15,617,846	△77,614	

○ 특별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102,609,595	95,633,569	6,976,026	
인 건 비	3,445,900	3,411,207	34,693	
물 건 비	5,989,345	5,631,407	357,938	
경 상 이 전	4,881,912	4,823,912	58,000	
자 본 지 출	33,656,806	27,137,306	6,519,500	
용 자 및 출 자			-	
보 전 재 원	1,137,476	1,137,476	-	
내 부 거 래	53,352,926	53,352,926	-	
예 비 비 및 기 타	145,230	139,335	5,895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59호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① 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설장비 이용 신청서와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장비 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는 순으로 사용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접수 기준은 책임공무원 또는 관리자가 가공센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된 일시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센터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센터의 적정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이용자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이용료) ① 가공장비의 이용료는 회당 4시간 기준으로 결정하며,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이용자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이용자는 군수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③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④ 이용료의 산정 또는 변경은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남해군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이용자 의무와 책임) ① 이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이용료 납부 후 시설물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이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제품의 품질 향상, 소비자의 안전 보호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4. 이용자가 부주의로 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료)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매 연도별로 위탁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위탁료를 산정 할 때 관리위탁 계획수립을 통해 수입과 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위탁료를 납부하며 납기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 ① 가공센터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 목표 및 성과 달성 계획
 2.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
 3. 경영 및 마케팅 계획
- ③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한 후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4.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가공센터 운영과 관련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가 부주의로 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손해배상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가 가공 의뢰한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수탁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 판매, 유통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탁자가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품의 반출 제한)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 1. 제품공정에서 제품이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
-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3. 이용자가 이용료를 미납했을 경우
- 4. 이용자가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 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책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남 / 여)	전화번호	
	주소			
	설립일자			
	취급품목			

수수료
없음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 등본 1부(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서 1부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3.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법인·단체현황 1부. 5. 그 밖에 가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 산 현 황

1. 재산현황

○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A+B+C)	부 동 산(A)			동산(B)	부채(C)
	계	토 지	건 물		

- 평가액 작성기준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재산세 과표
- 증빙서류 : 공시지가 확인서,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재산 유형별 현황

▶ 토 지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적(m ²)	소 유 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비고 (용도)
계						

▶ 건 물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적(m ²)	소유자 (등기부상)	재산세과표	비고 (용도)
계						

▶ 동산현황(공증증서, 예금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첨부)

동산형태	금 액	비 고
계		

▶ 부채 현황(증빙서류 첨부)

부채내용	금 액	비 고
계		

법인·단체 현황

일반현황

- 명 칭 :
- 주 소 :
- 설립일자 :
-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임원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취임일자	연락처
대표이사					
이 사					
감 사					

연 혁

년 월 일	연 혁

주요사업내용

법인·단체의 특징

【별지 제4호 서식】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위탁 지정서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남 / 여)	생년월일	
소 재 지			
취 급 품 목			
위 탁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간)
	년 월 일까지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 주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남해군 규칙 제1160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부과와 징수방법)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그 개산액을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3회까지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준공 시에 정산·징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 - 1276호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우리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지원사업, 지원대상 규정(안 제4조, 제5조)

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안 제6조)

- 구 성 : 위원장(부군수) 포함 10명 이내, 군수가 위촉

- 임 기 : 2년(연임 가능)

- 기 능 :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한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19,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종합사회복지관) 주민복지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847, 팩스 860-3882, e-mail : yyhbak@korea.kr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남해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2. 다문화가족의 학대,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4.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교육 및 한국어 교육과 언어능력향상에 필요한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체험행사 및 문화·체육 행사 사업
6.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불편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사업
8.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9. 결혼이민자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4조 각 호의 사업 대상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및 대한민국 국민 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해제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 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한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또는 관련 단체 대표
- 2. 남해경찰서와 남해교육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4. 다문화가족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결혼한 지 3년 이상 되는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 6. 그 밖의 관련 전문가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군수는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3.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4.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 5.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2.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 멸실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포상)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9-128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출입허가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측량·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 9. 20.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 나. 사업의 위치 : ①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860번지 일원(조도)
②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100번지 일원(호도)
- 다. 사업기간 : 2014년 ~ 2021년
- 라. 사업의 규모: 개발구역 내 192,721㎡(조도 78,774㎡, 호도 113,947㎡)
개발구역외 기반시설 3,776㎡(조도 1,683㎡, 호도 2,093㎡)

2. 토지의 출입통지사항

- 가. 출 입 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
토지출입 증표 소지자
- 나. 출입기간 : 2019. 9. 25. ~ 사업 종료 시까지(일출 후 ~ 일몰 전)
- 다.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측량 및 조사
- 라. 출입할 토지구역 :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일원 (별첨-토지조서 참조)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

3. 공고기간 및 장소

- 가. 공고기간 : 2019. 9. 20. ~ 2019. 10. 4.
- 나. 공고장소 : 남해군청, 미조면행정복지센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관광진흥담당관(☎055-860-8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6. 14.>

제 호

토지출입 허가증

- 1. 성명 (또는 명 칭) : (주)국토보상원
-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3-6
- 3. 사 업 의 종 류 :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 4. 출 입 목 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측량 및 조사
- 5. 출입할 토지의 구역 :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일원
- 6. 출 입 기 간 : 2019년 9월 25일 ~ 사업 종료 시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2019년 9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출입 토지 목록

■ 사업명: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일련 번호	사업 구역	소재지 (미조면)	지번	면적(m ²)		지목	비고
				당초	편입		
1	조도	미조리	860	469	469	전	
2	조도	미조리	861-1	1,583	1,583	전	
3	조도	미조리	861-3	648	648	전	
4	조도	미조리	862	330	330	전	
5	조도	미조리	862-1	305	305	전	
6	조도	미조리	863-1	145	145	대	
7	조도	미조리	863-2	315	315	전	
8	조도	미조리	864-1	1,699	1,699	전	
9	조도	미조리	864-2	267	267	대	
10	조도	미조리	864-3	123	123	전	
11	조도	미조리	865	598	598	임	
12	조도	미조리	866	248	248	임	
13	조도	미조리	867	410	410	대	
14	조도	미조리	868	136	136	대	
15	조도	미조리	869	255	255	전	
16	조도	미조리	870	79	79	대	
17	조도	미조리	871	136	136	대	
18	조도	미조리	872	459	459	대	
19	조도	미조리	874	218	218	대	
20	조도	미조리	875	1,101	1,101	학	
21	조도	미조리	876-1	526	506	전	
22	조도	미조리	877-1	42	6	전	
23	조도	미조리	878-4	38	1	전	
24	조도	미조리	879-2	185	185	학	
25	조도	미조리	879-6	414	404	전	
26	조도	미조리	889	1,003	976	전	
27	조도	미조리	890	820	820	전	
28	조도	미조리	891	780	780	전	
29	조도	미조리	892	1,263	1,104	전	
30	조도	미조리	893	685	685	전	
31	조도	미조리	893-1	79	79	전	
32	조도	미조리	894	436	436	대	
33	조도	미조리	895	565	565	전	
34	조도	미조리	896	377	377	대	
35	조도	미조리	897-1	162	162	대	
36	조도	미조리	897-2	89	89	대	
37	조도	미조리	898	136	136	전	
38	조도	미조리	898-1	384	384	임	
39	조도	미조리	898-2	1,227	1,227	잡	
40	조도	미조리	899	215	215	대	

출입 토지 목록

■ 사업명: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일련 번호	사업 구역	소재지 (미조면)	지번	면적(m ²)		지목	비고
				당초	편입		
41	조도	미조리	900	674	674	전	
42	조도	미조리	901	274	274	전	
43	조도	미조리	902	777	777	전	
44	조도	미조리	903	225	225	전	
45	조도	미조리	904	255	255	전	
46	조도	미조리	905	281	281	전	
47	조도	미조리	906	499	499	전	
48	조도	미조리	907	314	314	전	
49	조도	미조리	908	264	264	전	
50	조도	미조리	909	1,048	1,048	전	
51	조도	미조리	910	545	545	전	
52	조도	미조리	911	2,397	2,397	전	
53	조도	미조리	912	387	387	묘	
54	조도	미조리	913	813	813	전	
55	조도	미조리	914	397	397	전	
56	조도	미조리	915	169	169	전	
57	조도	미조리	916	212	212	전	
58	조도	미조리	917	202	202	전	
59	조도	미조리	918	235	235	전	
60	조도	미조리	919	102	102	전	
61	조도	미조리	920	456	456	전	
62	조도	미조리	920-1	240	240	전	
63	조도	미조리	920-2	73	73	전	
64	조도	미조리	920-3	385	385	대	
65	조도	미조리	921	86	86	대	
66	조도	미조리	922	397	397	전	
67	조도	미조리	923	397	397	대	
68	조도	미조리	924	704	704	전	
69	조도	미조리	925-1	1,038	1,038	전	
70	조도	미조리	925-2	754	754	전	
71	조도	미조리	926	1,614	1,614	전	
72	조도	미조리	926-1	102	102	전	
73	조도	미조리	927	116	116	전	
74	조도	미조리	928	1,131	1,131	전	
75	조도	미조리	929	274	274	전	
76	조도	미조리	930	337	337	전	
77	조도	미조리	931	304	304	전	
78	조도	미조리	932	939	939	전	
79	조도	미조리	934	1,478	1,478	전	
80	조도	미조리	934	645	645	전	

출입 토지 목록

■ 사업명: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일련 번호	사업 구역	소재지 (미조면)	지번	면적(m ²)		지목	비고
				당초	편입		
81	조도	미조리	935	420	420	전	
82	조도	미조리	936	357	357	전	
83	조도	미조리	937-1	787	787	전	
84	조도	미조리	937-2	549	549	전	
85	조도	미조리	938	182	182	전	
86	조도	미조리	939	142	142	전	
87	조도	미조리	971	179	179	대	
88	조도	미조리	972	106	106	대	
89	조도	미조리	973	169	169	대	
90	조도	미조리	974	169	169	대	
91	조도	미조리	976	33	33	대	
92	조도	미조리	977	60	60	대	
93	조도	미조리	1027-1	188	188	대	
94	조도	미조리	1027-2	736	736	임	
95	조도	미조리	1029-1	312	312	대	
96	조도	미조리	1029-2	1,681	1,681	잡	
97	조도	미조리	1029-3	66	66	대	
98	조도	미조리	1029-4	212	212	대	
99	조도	미조리	1029-5	59	59	대	
100	조도	미조리	1029-6	40	40	대	
101	조도	미조리	1029-7	127	127	대	
102	조도	미조리	1029-8	18	18	대	
103	조도	미조리	1029-9	1,312	1,312	도	
104	조도	미조리	1029-10	1,906	1,906	잡	
105	조도	미조리	1029-11	35	35	대	
106	조도	미조리	1029-12	42	42	대	
107	조도	미조리	1029-13	184	184	잡	
108	조도	미조리	1029-14	496	496	잡	
109	조도	미조리	1029-15	89	89	잡	
110	조도	미조리	1031	106	106	대	
111	조도	미조리	1032	21	50	전	
112	조도	미조리	1035	149	149	대	
113	조도	미조리	1037	477	477	임	
114	조도	미조리	1037-1	49	49	대	
115	조도	미조리	1038	182	182	임	
116	조도	미조리	1039	102	102	대	
117	조도	미조리	1040	83	83	대	
118	조도	미조리	1041	142	142	대	
119	조도	미조리	1042	79	79	임	
120	조도	미조리	1043	106	106	대	

출입 토지 목록

■ 사업명: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일련 번호	사업 구역	소재지 (미조면)	지번	면적(㎡)		지목	비고
				당초	편입		
161	조도	미조리	산195-7	160	160	임	
162	조도	미조리	산195-9	84	84	임	
163	조도	미조리	산195-10	44	44	임	
164	조도	미조리	산196-5	93	59	임	
165	조도	미조리	산196-7	336	336	임	
166	조도	미조리	산198	3,851	664	임	
167	조도	미조리	산200	2,579	1,127	임	
168	조도	미조리	공유수면	-	1,683		
169	조도기반시설	미조리	공유수면	-	1,683		
170	호도	미조리	1100	51	50	전	
171	호도	미조리	1101	27	179	전	
172	호도	미조리	1109	10	10	도	
173	호도	미조리	1110	50	35	대	
174	호도	미조리	1111	86	86	도	
175	호도	미조리	1113	88	26	대	
176	호도	미조리	1114	56	56	도	
177	호도	미조리	1115	24	10	대	
178	호도	미조리	1115-1	6	6	대	
179	호도	미조리	1116	99	1	대	
180	호도	미조리	1117	446	15	대	
181	호도	미조리	1117-1	1	1	대	
182	호도	미조리	1117-2	2	2	대	
183	호도	미조리	1119	1,587	17	전	
184	호도	미조리	1121-2	67	4	전	
185	호도	미조리	1123	198	70	전	
186	호도	미조리	1125	86	86	전	
187	호도	미조리	1126-2	197	197	전	
188	호도	미조리	1137	868	5	대	
189	호도	미조리	1137-1	97	9	전	
190	호도	미조리	1137-2	54	54	대	
191	호도	미조리	1137-3	10	10	전	
192	호도	미조리	1138	182	182	도	
193	호도	미조리	1149-1	132	132	전	
194	호도	미조리	1150	179	179	도	
195	호도	미조리	1163	155	155	전	
196	호도	미조리	1164	496	496	전	
197	호도	미조리	1165	46	46	전	
198	호도	미조리	1168	86	86	전	
199	호도	미조리	1169	99	99	전	
200	호도	미조리	1170	26	26	전	

출입 토지 목록

■ 사업명: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일련 번호	사업 구역	소재지 (미조면)	지번	면적(m ²)		지목	비고
				당초	편입		
201	호도	미조리	1171	893	893	전	
202	호도	미조리	1180	198	198	전	
203	호도	미조리	1181	86	86	전	
204	호도	미조리	1183	162	162	도	
205	호도	미조리	1184	66	66	전	
206	호도	미조리	1185	119	119	도	
207	호도	미조리	1186	886	886	전	
208	호도	미조리	1187	483	483	전	
209	호도	미조리	1188	1,289	1,289	전	
210	호도	미조리	1189	460	460	전	
211	호도	미조리	1190	17	17	도	
212	호도	미조리	1191	20	20	도	
213	호도	미조리	1192	20	20	도	
214	호도	미조리	1202-1	5	5	전	
215	호도	미조리	1205	13	13	도	
216	호도	미조리	1206	7	7	도	
217	호도	미조리	1207	139	139	도	
218	호도	미조리	1208	357	357	전	
219	호도	미조리	1209	198	198	전	
220	호도	미조리	1210	694	694	전	
221	호도	미조리	1211	496	496	전	
222	호도	미조리	1212	893	893	전	
223	호도	미조리	1213	99	99	전	
224	호도	미조리	1214	198	198	전	
225	호도	미조리	1215	198	198	전	
226	호도	미조리	1216	33	33	전	
227	호도	미조리	1217	99	99	전	
228	호도	미조리	1218	99	99	전	
229	호도	미조리	1219	99	99	전	
230	호도	미조리	1220	99	99	전	
231	호도	미조리	1221	198	198	전	
232	호도	미조리	1222	99	99	전	
233	호도	미조리	1223	99	99	전	
234	호도	미조리	1224	397	397	전	
235	호도	미조리	1225	893	893	전	
236	호도	미조리	1226	893	893	전	
237	호도	미조리	1227	198	198	전	
238	호도	미조리	1228	496	496	전	
239	호도	미조리	1229	53	53	전	
240	호도	미조리	1230	99	99	전	

출입 토지 목록

■ 사업명: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일련 번호	사업 구역	소재지 (미조면)	지번	면적(m ²)		지목	비고
				당초	편입		
241	호도	미조리	1231	298	298	전	
242	호도	미조리	1232	298	298	전	
243	호도	미조리	1233	83	83	전	
244	호도	미조리	1234	198	198	전	
245	호도	미조리	1235	1,388	1,388	전	
246	호도	미조리	1236	298	298	전	
247	호도	미조리	1237	397	397	전	
248	호도	미조리	1238	99	99	전	
249	호도	미조리	1239	893	893	전	
250	호도	미조리	1240	198	198	전	
251	호도	미조리	1241	397	397	전	
252	호도	미조리	1242	893	893	전	
253	호도	미조리	1243	198	198	전	
254	호도	미조리	1244	60	60	전	
255	호도	미조리	1245	496	496	전	
256	호도	미조리	1246	96	96	전	
257	호도	미조리	1247	198	198	전	
258	호도	미조리	1248	278	278	전	
259	호도	미조리	1249	714	714	전	
260	호도	미조리	1250	79	79	전	
261	호도	미조리	1251	99	99	전	
262	호도	미조리	1252	992	992	전	
263	호도	미조리	1253	298	298	전	
264	호도	미조리	1254	96	96	전	
265	호도	미조리	1255	36	36	전	
266	호도	미조리	1256	595	595	전	
267	호도	미조리	1257	1,587	1,587	전	
268	호도	미조리	1258	198	198	전	
269	호도	미조리	1259	595	595	전	
270	호도	미조리	1260	433	13	도	
271	호도	미조리	산210-5	18,645	1	임	
272	호도	미조리	산210-9	439	439	임	
273	호도	미조리	산210-11	212	116	임	
274	호도	미조리	산210-12	33	20	임	
275	호도	미조리	산210-13	670	203	임	
276	호도	미조리	산210-14	204	204	임	
277	호도	미조리	산210-16	133	133	임	
278	호도	미조리	산211-1	671	640	임	
279	호도	미조리	산211-2	7,026	19	임	
280	호도	미조리	산212-1	224	208	임	

출입 토지 목록

■ 사업명: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일련 번호	사업 구역	소재지 (미조리면)	지번	면적(m ²)		지목	비고
				당초	편입		
281	호도	미조리	산212-2	1,246	5	임	
282	호도	미조리	산213-1	105	105	임	
283	호도	미조리	산229	19,607	15	임	
284	호도	미조리	산229-1	233	210	임	
285	호도	미조리	산229-2	1,606	8	임	
286	호도	미조리	산229-4	89	89	임	
287	호도	미조리	산229-5	102	102	임	
288	호도	미조리	산229-7	171	171	임	
289	호도	미조리	산230-1	46,413	681	임	
290	호도	미조리	산231-3	694	694	도	
291	호도	미조리	산231-4	2,281	2,281	임	
292	호도	미조리	산231-5	7	7	도	
293	호도	미조리	산231-7	181	181	임	
294	호도	미조리	산231-9	156	156	임	
295	호도	미조리	산281-1	5,161	57	임	
296	호도	미조리	산281-5	298	65	도	
297	호도	미조리	산281-8	3	3	임	
298	호도	미조리	산281-9	342	330	임	
299	호도	미조리	산281-10	2,940	32	임	
300	호도	미조리	산281-11	84	84	임	
301	호도	미조리	산281-12	17	17	임	
302	호도	미조리	산281-14	413	19	임	
303	호도	미조리	산293-4	3,842	570	임	
304	호도	미조리	산293-8	1,492	9	임	
305	호도	미조리	산341-1	779	39	임	
306	호도	미조리	산341-3	893	893	임	
307	호도	미조리	산341-4	198	198	임	
308	호도	미조리	산341-6	595	595	임	
309	호도	미조리	산341-7	595	595	임	
310	호도	미조리	산341-8	510	510	임	
311	호도	미조리	산341-9	15	23	임	
312	호도	미조리	산349-1	11,603	11,603	임	
313	호도	미조리	산349-2	2,479	2,479	임	
314	호도	미조리	산356-2	5,744	5,744	임	
315	호도	미조리	산356-3	3,339	3,339	임	
316	호도	미조리	산356-4	1,271	1,271	임	
317	호도	미조리	산356-5	5,276	5,276	임	
318	호도	미조리	산356-6	5,097	4,831	임	
319	호도	미조리	산375	6,050	6,050	임	
320	호도	미조리	산375-1	5,795	5,795	임	

출입 토지 목록

■ 사업명: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일련 번호	사업 구역	소재지 (미조리)	지번	면적(m ²)		지목	비고
				당초	편입		
321	호도	미조리	산375-2	155	155	임	
322	호도	미조리	산376-1	4,463	4,463	임	
323	호도	미조리	산376-2	4,959	4,959	임	
324	호도	미조리	산389	5,951	5,951	임	
325	호도	미조리	산390-3	99	99	임	
326	호도	미조리	산390-5	881	881	임	
327	호도	미조리	산390-6	12,865	12,865	임	
328	호도	미조리	공유수면	-	1,211		
329	호도기반시설	미조리	1096	63	63	전	
330	호도기반시설	미조리	1098	13	1	전	
331	호도기반시설	미조리	1100	51	49	전	
332	호도기반시설	미조리	산281-5	298	29	도	
333	호도기반시설	미조리	산281-10	2,940	301	임	
334	호도기반시설	미조리	산281-14	413	353	임	
335	호도기반시설	미조리	산293-1	198	198	임	
336	호도기반시설	미조리	산293-2	298	263	도	
337	호도기반시설	미조리	산293-3	4,239	19	임	
338	호도기반시설	미조리	산293-11	260	260	임	
339	호도기반시설	미조리	공유수면	-	557	공유수면	

출 입 자 명 단

연번	이름	직급	생년월일	비고
1	조현준	대표이사	1968.09.26	
2	강동규	이사	1965.06.17	
3	김재기	부사장	1962.02.07	
4	한동기	부장	1978.01.15	
5	강병수	부장	1979.12.19	
6	조광현	부장	1979.12.19	
7	송명신	팀장	1982.08.21	
8	손윤진	팀장	1983.08.22	
9	신덕효	팀장	1985.02.16	
10	김관수	대리	1993.01.22	
11	김동우	대리	1991.10.04	
12	김정길	대리	1988.09.27	
13	임창우	대리	1990.12.24	
14	김근우	대리	1991.08.30	
15	이다혜	대리	1992.10.14	
16	조명철	대리	1986.07.31	

남해군 공고 제 2019 - 1305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남변교차로~평리교차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 남변교차로~평리교차로) 개설공사
- 2. 출입구간 :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544-8번지 외 41필지(붙임 참조)
- 3. 출입기간 : 2019. 9. 30. ~ 사업 종료시까지
-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도시건축과장)
- 4.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055-860-3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입토지조서 1부. 끝.

국·공유지 및 사유지별 집계표

구 분	소관청	필지수	면적		비고
			공부상면적	면적	
국·공유지	남해군	20	43,473	3,121	
	국도교통부	9	11,985	8,656	
	농림축산식품부	1	47,495	839	
	경상남도	4	2,171	854	
소계		34	105,124	13,470	
사유지		8	5,563	622	
소계		8	5,563	622	
합계		42	110,687	14,092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성명	관계인	
	군	면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남해	남해 남변리	544-8	도	205	3	국	국(국토교통부)			
2	남해	남해 남변리	545-3	도	68	25	국	국(국토교통부)			
3	남해	남해 남변리	555	도	37,469	20	국	국(남해군)			
4	남해	남해 남변리	555-2	답	11	11	국	국(남해군)			
5	남해	남해 남변리	491-4	답	44	8	정*지	경남 남해군 남해를 남변리 45			
6	남해	남해 남변리	490-1	도	4,714	3,788	국	국(국토교통부)			
7	남해	남해 남변리	490	답	271	5	이*훈	경남 남해군 남해를 화전로 73-1			
8	남해	남해 남변리	483	도	827	69	국	국(남해군)			
9	남해	남해 평리	1189-7	답	7	4	국	국(국토교통부)			
10	남해	남해 평리	1599	도	2,928	2,193	국	국(국토교통부)			
11	남해	남해 평리	1200	대	465	59	이*운	경남 남해군 남해를 스포츠로 29-11			
12	남해	남해 평리	1200-2	도	123	86	국	국(경상남도)			
13	남해	남해 평리	1594	구	47,495	839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4	남해	남해 평리	1224-4	답	588	493	국	국(남해군)			
15	남해	남해 평리	1224-1	창	450	49	김*석	경남 남해군 남해를 서변동 36-1			
16	남해	남해 평리	1230-1	도	3,758	2,350	국	국(국토교통부)			
17	남해	남해 평리	1223	답	519	43	장*용	경남 남해군 남해를 남변리 462-8			
18	남해	남해 평리	1221-8	도	1,489	1,386	국	국(남해군)			
19	남해	남해 평리	1222	창	1,504	12	남해축산업협동조합	경남 남해군 남해를 남변리 422-5			
20	남해	남해 평리	1230	답	1,223	439	박*호	부산시 서구 구덕로 322번길 6, 602호			
21	남해	남해 평리	1221-4	잔	213	45	국	국(남해군)			
22	남해	남해 평리	1230-2	답	76	76	국	국(남해군)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성명	관계인	
	군	면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3	남해	남해 평리	1231-14	도	5	4	국	국(남해군)			
24	남해	남해 평리	1221-6	잡	36	35	국	국(남해군)			
25	남해	남해 평리	1231-10	잡	281	278	국	국(남해군)			
26	남해	남해 평리	1221-7	잡	99	99	국	국(남해군)			
27	남해	남해 평리	1230-3	답	165	36	국	국(남해군)			
28	남해	남해 평리	1180-1	답	42	1	국	국(남해군)			
29	남해	남해 평리	1243-1	답	250	120	국	국(남해군)			
30	남해	남해 평리	1243-3	구	260	115	국	국(남해군)			
31	남해	남해 평리	1179-1	답	1,227	98	국	국(남해군)			
32	남해	남해 평리	1243-4	도	50	37	국	국(남해군)			
33	남해	남해 평리	1203-3	답	206	67	국	국(남해군)			
34	남해	남해 평리	1221	잡	1,087	7	남해축산업협동조합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422-5			
35	남해	남해 서변리	197-5	도	639	33	국	국(경상남도)			
36	남해	남해 서변리	194-2	도	172	124	국	국(남해군)			
37	남해	남해 서변리	196-1	도	36	24	국	국(국토교통부)			
38	남해	남해 평리	1231-4	도	482	283	국	국(경상남도)			
39	남해	남해 평리	1233-2	도	218	218	국	국(국토교통부)			
40	남해	남해 평리	1231-15	잡	7	7	국	국(남해군)			
41	남해	남해 평리	1231-12	구	51	51	국	국(국토교통부)			
42	남해	남해 평리	1241-3	도	927	452	국	국(경상남도)			
계					110,687	14,092					

남해군 공고 제2019-1327호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기존1급~6급)가 폐지되어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특별교통 수단의 이용대상자, 운행범위, 회원제 등에 대한 기준 및 표준절차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1)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휠체어 차량이 아닌 비 휠체어 차량도 운행가능(제10조)

-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는 차량
- 2)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규정(제11조)

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규정(제12조)

마.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제16조)

바.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규정(제17조)

- 1) 관내요금 : 대중교통 요금의 2배이하
- 2) 관외요금 : 시외버스 요금의 2배이하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19년 10월 1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456, 팩스 055-860-370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자세한내용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055-860-34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 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및 요금.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4명 이상 위촉한다.

- 1. 장애인·노인·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 2. 남해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 3. 교통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가
- 4.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저상버스 도입과 운행에 관한 사항
- 3.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 4.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에 관한 사항
- 5.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에 관한 사항
- 6.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 7. 이동편의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 8.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 9. 저상버스 운전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지체장애, 뇌병변등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이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및 그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기간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이하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 가. 관내요금: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
- 나. 관외요금: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군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군을 관할하는 도(道)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앞쪽]

접수 번호		결 재	접수자		결재권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장애(장애 급)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 체 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해당 없음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뒤쪽]

신청서 작성 안내

-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본인 확인 서류
 -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〇〇〇〇〇〇 이동지원센터 (☎〇〇〇-〇〇〇)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남해군 공고 제2019 - 1328호

남해군 주차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주차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주차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및 과징금 처분 기준을 새로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에서 과징금 징수방법 등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위임한 과징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등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10월 1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454, 팩스 055-860-370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전화 055-860-3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 호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를 “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제3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 따른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은 100분의 2로 한다.

제4장제21조의2 및 제23조를 각각 제19조의2 및 제24조로 하고, 제5장에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과징금) ① 군수가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징금의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의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준 독촉장을 발부한다.

④ 제1항에 따라서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1조의2제3항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p>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제7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그 규격은 별표2와 같다.</p> <p>1. ~ 4. (생략)</p>	<p>제7조(주차장의 표시) ① ----- ----- 시행규칙 제8조-----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 (생략)	제19조의2 (현행 제21조의2와 같음)
<신설>	제20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 따른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은 100분의 2로 한다.
<신설>	제5장 보칙
<신설>	<p>제23조(과징금) ① 군수가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징금의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의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준 독촉장을 발부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서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제23조 (생략)	제24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남해군 공고 제2019 - 1329호

면허처분 및 소멸 공고문 (남해양식 제532호)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양식 제532호	패류양식 (바닥식)	바지락	삼동 영지	50,000	2019.09.29 2029.09.28 (10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영지 어촌계	제126호 재개발

※ '19/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양식 제126호	패류양식 (바닥식)	바지락	삼동 영지	50,000	2009.09.29 2019.09.28 (10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영지 어촌계	